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360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서애련

피 고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 론 종 결 2021. 1. 8.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의료법인 G이 2016. 3. 17. 피고에게 한 2,567,299,86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628,824,418원, 원고 B에게 140,871,924원, 원고 C에게 339,381,249원, 원고 D에게 226,254,166원, 원고 E에게 226,254,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C, D,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628,824,418원, 원고 B에게 140,871,924원, 원고 C에게 341,830,079원, 원고 D에게 227,886,719원, 원고 E에게 227,886,7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등

○ 원고 A은 의료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병원의 병원장으로, 원고 B 및 I은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원고 A, B 및 I은 G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692호), 위 법원은 2018. 8. 17.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G)는,

가. 원고 A에게 2,635,37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I에게 1,906,195,022원 및 그 중 1,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508,136,325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각 2018. 8. 17.까지 연 5%의, 2018. 8.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I은 2018. 11. 13. 사망하였고, 망 I의 G에 대한 채권은 망 I의 배우자인 원고 C에게 3/9, 자녀인 원고 D, E, A에게 각 2/9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 위 판결에 대하여 G이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8나24423호), 위 법원은 2019. 9. 27. G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망 I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피고(G)는,

가. 원고 C에게 635,398,340원 및 위 돈 중 4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위 돈 중 169,378,775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각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D, E에게 각 423,598,894원 및 위 돈 중 각 288,888,888원에 대하여는 각 2016. 10. 27.부터, 위 돈 중 각 112,919,183원에 대하여는 각 2014. 12. 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에 대한 변제 등

○ 원고 A은 H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의사, 간호사를 등록하고 허위로 작성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82,910,11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35호로 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 이에 원고 A은 G에게 2014. 4. 22. 1,000,000,000원, 2014. 6. 11.

2,562,210,110원, 2014. 7. 2. 620,700,000원 합계 4,182,910,110원을 대여하였고, G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편취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대여금을 공탁하였다.

○ 원고 A은 2014. 7. 2. G과 사이에 "G은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부당이득금 4,182,910,1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하였으며, G이 변제공탁한 위 4,182,910,110원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정산 등의 방식에 따라 반환받으면 그 즉시 반환금액을 대여자인 원고 A에게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 원고 A은 2014. 8. 28. 이 사건 형사사건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영암군수는 2016. 2. 16. 위 편취금과 관련하여 G에 대해 2,653,933,61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편취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자가 영암군이라는 이유로 G의 공탁금 중 34,406,410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G이 회수하는 데 동의하였고, 이에 G은 2016. 3. 9. 공탁금 중 나머지 4,148,503,700원을 회수하였다.

○ G은 2016. 3. 17. 피고에게 위와 같이 회수한 공탁금 중 2,567,299,86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G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 이전에 성립한 아래 표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당사자	채권	금액(원)
원고 A	대여금채권	2,635,370,090
	I의 상속채권 ¹⁾	423,598,894
원고 B	대여금채권	265,000,000
원고 C	I의 상속채권	635,398,340
원고 D	I의 상속채권	423,598,894
원고 E	I의 상속채권	423,598,894
합계(원)		4,806,565,112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G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공탁금 회수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G과 피고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G에게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G의 요청에 따라 2019. 9월경부터 G의 채권자에게 피고가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G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2015. 12. 말경에는 G에 대한 대여금이 20억 원 이상이 되어 이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1) 원고 A이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G에 대한 채권은 G에 대한 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8회합5034호)에서 G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소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K단체, L조합,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는 G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들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거나 당초부터 채무의 본지를 벗어나는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G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G의 사해의사는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피고는 G에 대한 대여금 내역으로 각 입출금거래내역(을 제1호증)과 각 거래처원장(을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피고가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을 G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기재하거나, G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변제금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G에게 20억 원 이상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의 O조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가 G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P이 G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G의 이사장이었던 Q의 송금 및 Q에 대한 송금 내역과 다액의 현금 입금내역이 발견되는데(이 법원의 K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아래 ④,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G 및 피고의 당시 자금상황 및 ①항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가 G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의심이 들게 한다.

③ 피고는 G이 아닌 G의 채권자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G과 사이의 대여금액을 확정할 바 없고, G과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거나 G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

④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G은 이 사건 변제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자산의 상당 부분은 미수금 채권이였다.

기준일	자산(원)	부채(원)	총자산(원)	자산 중 미수금(원)
2015. 12. 31.	13,311,522,310	14,823,102,217	-1,511,579,907	4,672,365,051
2016. 12. 31.	15,189,905,469	16,482,413,362	-1,292,507,893	4,916,058,763

⑤ 피고는 자본금 10,000,000원의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

매출액이 347,280,000원(영업이익 -40,680,000원), 2016년 매출액이 808,550,000원(영업이익 78,240,000원)에 불과하여 당시 피고에게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⑥ 피고의 대표이사 P은 2015. 2. 24. G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변제 당시 G의 자금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의 주장 자체의 의하더라도, 피고는 G과 합의한 채권액 2,275,686,420원보다 291,613,440원을 초과로 변제받아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합의된 채무액보다 초과하여 변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변제를 받은 당일 G에게 291,613,440원을 반환한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6. 3. 21. Q에게 3억 원을 지급한 내역만이 있을 뿐이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G이 2016. 3. 17. 피고에게 한 2,567,299,860원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628,824,418원²⁾,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0,871,924원³⁾, 원고 C에게 339,381,249원⁴⁾, 원고 D에게 226,254,166원⁵⁾, 원고 E에게 226,254,166원⁶⁾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2) 1,633,867,525원(= 2,567,299,860원 × 3,058,968,984원/원고들 채권액 합계 4,806,565,112원, 이하 원 미만 버림) 중 원고 A이 구하는 금액

3) 141,542,754원(= 2,567,299,860원 × 265,000,000원/원고들 채권액 합계 4,806,565,112원)중 원고 B이 구하는 금액

4) = 2,567,299,860원 × 635,398,340원/원고들 채권액 합계 4,806,565,112원(원고 C가 구하는 341,830,079원보다 적다)

5) = 2,567,299,860원 × 423,598,894원/원고들 채권액 합계 4,806,565,112원(원고 D이 구하는 227,886,719원보다 적다)

6) 그 계산내역은 원고 D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C, D, E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림